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의연월일: 2012년 11월 7 일
동 의 자: 이광희
찬 성 자: 김종필

1. 제안이유

○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」의 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규정을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조직명칭 변경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 명칭 개정(안 제3조제2항제3호)

- 청주시·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 ⇒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별첨
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
○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　　호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본문 중 “청주시·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”을 “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(생략) 3. 행정문화위원회 가. 공보관, 감사관, 행정국, 문화관광환경국, **청주시·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,** 자치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다. 충북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4. (생략) 5. (생략) 6. (생략)	**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** **① (현행과 같음)**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행정문화위원회 가. 공보관, 감사관, 행정국, 문화관광환경국, **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,** 자치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다. 충북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과 같음) 6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③~⑥ (생략)